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최근 처분 횟수를
고려해 가중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분 차수를 세는 기준이 불분
명해 집행상 혼란을 초래하고, 이는 법 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
뜨려 국민 권익 침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의 차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 처분의 차수 적용 기준 명확화(안 별표1)

- 가중된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 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전자거래과	
연 락 처	(044) 200 - 4469